

후원회 설립 가이드북

02.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

- 1 업무 흐름도
- ② 예금계좌 변경신고
- ③ 후원회 회원 모집
- 4 후원금 모금
- 5 정치자금영수증 발행
- 6 후원회 변경등록·해산



02 후원회 설립 이후 절차

1. 업무 흐름도

예금계좌 변경신고 후원회 회원 모집

후원금 모금

⇨

정치자금영수증 발행

⇨

후원회 변경등록·해산 (필요시)

관련 규정

- □ 예금계좌 변경신고
- 규칙 제34조(예금계좌 등의 신고)
- □ 후원회 회원 모집
- 법 제8조(후원회의 회원)
- 규칙 제12조(후원회의 회원명부)
- □ 후원금 모금
- 법 제10조(후원금의 모금·기부), 제11조(후원인의 기부한도 등), 제12조(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), 제14조(후원금 모금방법)
- 규칙 제15조(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)
- 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
- 법 제17조(정치자금영수증)
- 규칙 제21조(정치자금영수증)
- □ 후원회 변경등록·해산
- 법 제7조(후원회의 등록신청 등), 제19조(후원회의 해산 등)
- 규칙 제11조(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등), 제22조(후원회 해산신고의 처리)

2. 예금계좌 변경신고

가. 최초 신고한 회계책임자 명의의 정치자금 수입·지출계좌를 후원회 명의로 변경신고 합니다.

후원회 명의 통장으로 변경이유

- □ 후원인이 세액공제 증빙자료로 금융거래 입금증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후원회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이어야 합니다.
- □ 회계책임자 변경시 회계책임자 명의의 정치자금 예금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.
- 나. 후원회 등록증 수령 후 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은행에서 후원회 명의 계좌를 새로 개설한 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후원회 명의 계좌로 예금계좌를 변경신고 합니다.

후원회 명의 예금계좌 변경신고 절차

- □ 회계책임자 명의 예금계좌 개설(금융기관) → 후원회등록신청시 예금계좌 신고(선관위) → 후원회등록증 수령(선관위) → 고유번호증 발급(세무서) → 후원회명의 예금계좌 개설(금융기관) → 예금계좌 변경신고(관할선관위)
 - ※ 후원회등록증에 기재된 명의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며, 발급된 고유번호증으로 금융기관에서 단체명의 계좌개설 가능
 - ※ 고유번호증 발급은 세무서 업무로 해당 세무서에 확인 후 발급

후 원 회 회원모집 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 원 회 변경·해산

[작성예시]

[규칙 별지 제29호 서식]

>

예금계좌 (신고)·(변경신고)서①										
문서번호	문서번호									
구	분	예금주	금융기관명	계 좌 번 호	비고					
		000	○○은행	123-45-000911						
변경전	수 입 용									
1.0.1										
	지 출 용	000	OO은행	123-45-000911						
		OOO후원회	○○은행	234-12-112244						
변경후	수 입 용									
진 70 주										
	지 출 용	000후원회	○○은행	234-12-112244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34조제4항제1호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정치자금의 수입·지출용 예금계좌를 (신고)·(변경신고)합니다.

20 년 월 일

-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직인 ②
- 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- ※ 구비서류 : 예금통장 사본 각 1부
- ① 1. 정치자금 수입용 예금계좌는 그 수에 제한이 없으며, 정치자금 지출용 예금계좌는 1개만 신고 하여야 합니다.
 - 2. 신고인은 후원회대표자, 지방의회의원이 됩니다.
 - 3. 예금계좌 신고시에는 "변경후" 란은 작성하지 아니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 ► 후 원 회 회원모집	▶ 후 원 금 모 금	➤ 정치자금영수증 발행	▶ 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

	작 성 요 령
1)	에금계좌 신고 혹은 변경신고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를 합니다. 이하 같습니다. ※ 예금계좌 신고 - 기존의 정치자금 계좌에서 추가 ※ 예금계좌 변경 - 기존의 정치자금 계좌를 변경
2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
예금계좌	후 원 금 모 금	➤ 정치자금영수증	후 원 회
변 경 ▶ 회원모집		발행 ➤	변경·해산

3. 후원회 회원 모집

- 가. 후원회는 후원회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, 후원회 회원이 되거나 후원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회에 가입원서나 탈퇴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나. 개인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.

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(법 제8조)

- □ 16세 미만 국민
- □ 외국인
- □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
- □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다음과 같은 사람(정당법 제22조제1항)
- 「국가공무원법」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
- 사립학교의 교원
-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
- 「공직선거법」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

후원회 회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및 교원(정당법 제22조)

- □ 대통령, 국무총리, 국무위원
- □ 국회의원, 지방의회의원,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
- □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·비서관·비서·행정보조요원
- □ 국회 상임위원회·예산결산특별위원회·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
- □ 국회의원의 보좌관·비서관·비서
- □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,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·행정보조요원
- □ 「고등교육법」제14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총장·학장·교수·부교수·조교수· 강사인 교원

예금계좌 후 원 회 변 경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- 다. 후원회는 회원이 제출한 가입원서 및 탈퇴원서에 따라 회원 명부에 정리·관리하여야 합니다.
- 라. 후원회 운영 중 회원명부·가입원서·탈퇴원서 등 후원회 회원의 가입과 탈퇴에 관련된 서류는 상시 보관하여야 합니다.
- 마.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하여야 합니다.

후원회 회원 관련 벌칙(법 제48조, 제51조)

- □ 회원명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자
- 2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회 회원이 될 수 없는 자를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한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🏋 후원회 회원 관련 질의회답

- □ 후원회 등록 전 예비회원 모집
- 후원회의 회원모집은 「정치자금법」 제15조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므로 후원회로 등록하기 전에 예비회원을 모집할 수는 없을 것임(2010. 3. 23. 회답).

후 원 회 회원모집 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 원 회 변경·해산

>

[작성예시1]

후원회 (가입) · (탈퇴)원서①							
성 명	0 0	○ (한자 :)	생년월일	1977. 2. 13.			
주 소	00시 0	○구 ○○로 1					
직 업 (근무처)	회사원()	○상사)					
연 락 처	자 택	02-123-5678	휴대폰	010-123-4567			
한 역 시	직 장	02-237-5698	E-mail				
	ւեցոբա	☑ 예금계좌입금					
회비약정	납부방법	□ 기타())				
	납부금액	□ 금100,000원	□ 기타()			
본인은 (탈퇴)②하 <u>-</u>		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 가입)·(탈퇴)③원서를 제출		원회에 (가입)·			
	(가입)·(탈퇴)④연월일 : 년 월 일						
			성 명	0000			
OO시·도의회의원(OO구·시·군의회의원)OOO후원회 귀중							
주 1. 회원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(성명, 생년월일, 주소, 직업 및 전화번호) 외에는 후원회에서 임의로 서식을 작성할 수 있음. 2. 회원의 가입·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.							

예금계좌 변 경 ▶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	작 성 요 령	
① ~ ④	후원회 가입 혹은 탈퇴 중 하나를 선택하여 "○" 표시합니다.	Ollo

예금계좌 변 경 > 회원모집 > 후 원 금 → 정치자금영수증 → 후 면 경 > 보행 > 변경	원 회 경·해산
--	-------------

[작성예시2]

후원회 회원명부

번호	성 명	생년월일	주 소	직 업	전화번호	가 입 연월일	탈 퇴 연월일	비고
1	000	69.12.12	00시 00구 00로 111	자영업	123-4567	'24. 7. 1.		
2	000	89.10.29	00시 00구 00로 11	학생	345-2478	'24. 7. 1.		
3	000	56.01.27	OO도 OO시 OO로 1	자영업	503-1700	'24. 7. 1.		
4	000	71.09.11	OO도 OO시 OO로 52	회사원	512-1237	'24. 7. 1.	'24. 11. 21.	
5	000	62.12.17	00시 00구 00로 79	지방의원	123-1219	'24. 7. 1.		
6								
7								
8								
9								
10								
11								
12								
13								

주 : 회원의 가입·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함.

예금계좌 변 경 → 후 원 회 모 금 → 정치자금영수증 후 원 회 변경·해산

4. 후원금 모금

- 가. 후원회는 계좌이체·현금 등을 이용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.
 - ※ 집회에 의한 방법으로는 모금할 수 없음.

후원인의 정치후원금 기부(법 제11조)

- □ 후원인은 연간 모든 후원금을 합쳐서 2천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할 수 없으며, 후원인이 1개 후원회 대상 연간 기부한도액은 시·도의회의원후원회는 2백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1백만원입니다.
- 나. 후원회가 연간 모금·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시·도의회의원 후원회는 5천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3천만원 입니다.
- 다.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연간 모금·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·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라. 회계책임자는 모금액이 모금한도에 근접한 때에는 수시로 예금계좌를 확인하여 계좌를 폐쇄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1회 10만원 이하,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.
- □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받은 금액은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 ▶ 후 원 회 회원모집	후 원 금 모 금	➤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➤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

☞ 후원회 모금 관련 벌칙(법 제45조, 제47조, 제48조)

- □ 연간 기부한도액(2천만원)을 넘거나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한도액(시·도의회의원 후원회는 2백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1백만원)을 넘어서 기부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회의 모금·기부한도(시·도의회의원후원회는 5천만원, 자치구·시·군의회의원후원회는 3천만원)를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「정치자금법」의 규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금하거나 후원금 모금을 고지·광고한 자
-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회로부터 모금을 위임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치자금영수증 원부, 기부자의 인적사항 또는 후원금을 인계하지 아니한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
- 200만원 이하의 벌금

예금계좌 변 경 ▶ 후 원 회 모 금 ▶ 정치자금영수증 후 원 회 변경·해산

후원회 모금 관련 질의회답

- □ 후원회 회원이 아닌 자의 후원금 기부
- 후원회의 회원이 아닌 자도「정치자금법」제6조의2(후원인의 기부한도등)의 규정에 의거 기부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후원회에 금품을 기부할 수 있음(2002. 6. 3. 회답).
- □ 신용카드 조회기(단말기)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
- 이동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신용카드 체크기(단말기)를 이용하여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음. 다만, 정당이나 후보자(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)를 지지·추천하거나 집회에 의한 모금 등 「공직선거법」 또는 「정치자금법」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모금해서는 안 됨(2005. 10. 19. 회답).
- □ 모바일블로그를 이용한 정치자금 모금
- 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에 따라 등록된 후원회는 모바일 블로그를 이용하여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후원인에게는 후원인이 결제한 금액이 기재된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고 통신사 등에 지급된 수수료는 후원금 모금경비로 처리하여야 함(2006. 11. 22. 회답).
- □ 페이팔(Paypal) 서비스를 이용한 후원금 모금
- 「외국환거래법」등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「정치자금법」상 제한되지 아니함. 다만, 「정치자금법」제31조(기부의 제한)에 따라 외국인,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기부할 수 없으며, 누구든지 국내·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기부할 수 없음(2019. 9. 27. 회답).
- □ 텀블벅을 이용한 후원금 모금
 - 후원회가 크라우드펀딩 사이트인 텀블벅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직접 후원금을 모금하는 방식이라면 「정치자금법」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(2019. 3. 26. 회답).
- □ 후원회홈페이지에서 모금액현황 공개 이벤트
- 후원회홈페이지에서 이미지화된 가상공간을 상징적으로 분양하는 방식의 모 금액현황 공개 이벤트를 하는 것은 무방함(2010. 5. 7. 회답).

예금계좌 변 경	>	후 원 회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5. 정치자금영수증 발행

① 정치자금영수증 교부

가. 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하여 후원인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
유의사항

- □ 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이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제작하는 (종이)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·교부할 수 있으며, 별도의 영수증 발급프로그램은 사용이 불가합니다.
- 나. 후원회는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영수증을 발행 하여 후원회에 보관하여야 합니다.

업무TIP

- □ 전자 정치자금영수증의 경우,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금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별도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아도 됩니다.
- □ 후원인이 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거나 후원인 정보를 알 수 없거나 후원인이 연간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에도 후원회는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금 내역을 모두 등록하여야 합니다.
- □ 후원회가 후원인의 인적사항을 뒤늦게 파악한 경우, 기존에 발행한 전자 정치자금영수증 내역을 수정하여 후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.

정치자금영수증 교부 방법

- □ 후원인에게 직접 전달
- □ 우편 발송
- □ 문자메시지·E-mail·카카오톡 등 이용 발송(PDF 혹은 그림파일로 변환하여 발송)

예금계좌 변 경 ➤ 후 원 회 모 금 ➤ <mark>정치자금영수증</mark> 발행 ➤ 변경·해산

다. 후원회는 수입용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에 대한 정치자금 영수증 발행을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입금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후 원 회 회원모집

>

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>

후 원 회 변경·해산

[작성예시1]

[별지 제21호의2서식]

7 7	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	및 연락	처 통보 요청서
후원회명①			
입금계좌②		예금주명	
요청근거	「정치자금법」제17조제13항		
요청사유	「정치자금법」제17조에 따른	- 정치자금영	수증 발행
요청내용	붙임 회보서에 기재된 입금내역	벽에 대한 입금	1 의뢰인의 성명과 연락처

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제1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1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 1부.③

년 월 일

○○후원회 대표자④ 직인

○ ○ ○ ○ 귀중(금융기관명)

주 "입금계좌" 란에는 「정치자금법」 제34조제4항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	>	후 원 회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
2	신고된 수입용 예금계좌의 계좌번호를 적습니다.
3	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를 작성합니다.
4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
예금계좌 변 경 → 후 원 회 모 금 → <mark>정치자금영수증</mark> 발행 → 변경·해산

[작성예시2]

[별지 제21호의3서식]

	후원금 입금의뢰인 성명 및 연락처 회보서											
	입금내역 회 보 내 역											
연번	입고일	입금명의	입금액	성명	연락처	비고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17조제13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1조제10항에 따라 위와 같이 회보합니다.

년 월 일

(금융기관) ○ ○ ○ ○ 대표자 직인

○○후원회 귀중

- 주 1. "입금내역"은 후원회가 인적사항 통보를 요청하는 때에 작성합니다.
 - 2. "입금일"란에는 신고된 정치자금계좌에 후원금이 입금된 일자를 기재합니다.
 - 3. "입금명의"란에는 예금통장에 표시된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등의 내용을 그대로 기재합니다.
 - 4. "회보내역"은 금융기관이 작성합니다.
 - 5. "성명"란에는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실명을, "연락처"란에는 전화번호(휴대전화의 전화번호를 포함한다)를 기재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	> 축	- 원 회 원모집	>	후 모	원 금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	--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	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② 후원금의 세액공제

가. 후원인은 본인이 기부한 정치후원금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정치후원금 세액공제(법 제59조)

- □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(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)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- □ 또한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.
- □ 다만,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
- 나. 후원회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·교부 외에 고유번호증을 이용한 홈택스 기부금단체 등록을 통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후원금 내역을 직접 등록하여 후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

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방법

- □ 기부금 단체 등록[국세청홈택스(http://hometax.go.kr)]
 - · [장려금·<u>연말정산</u>·전자기부금] [연말정산간소화] [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기부금수령단체 자료제출 신청]
- □ 후원금 내역 등록[국세청홈택스(http://hometax.go.kr)]
 - · [장려금·연말정산·전자기부금] [연말정산간소화] [영수증 발급처 자료제출 소득·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일정 및 제출방법 안내 자료제출 매뉴얼 (기부금단체용)]
 - ※ 정치후원금센터에 후원금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등재되지 않습니다.
 - ※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등록 문의는 국세청 홈택스(☎126→①→⑤)

🔯 정치자금영수증 관련 벌칙 및 과태료(법 제46조, 제47조, 제51조)

- □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·변조하여 사용한자
-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을 발행 또는 교부하지 아니한 자
-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
- □ 정치자금영수증 발행·교부를 해태한자
-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예금계좌 변 경 → 후 원 회 모 금 → 정치자금영수증 → <mark>후 원 회</mark> 보행 **후 원 회** 변경·해산

6. 후원회 변경등록·해산

가. 후원회 대표자는 후원회 등록신청 내용 중에서 변경이 생긴 때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.

변경등록 대상

□ 명칭, 소재지, 정관 또는 규약, 대표자의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, 회인 및 □ 대표자 직인의 인영

변경등록신청 중 회의록을 첨부해야하는 경우

- □ 정관의 개정
- □ 대표자의 변경
- 나. 후원회는 후원회지정권자인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(예: 지방의회의원이 사직, 퇴직, 사망 등으로 그 신분을 상실)하거나, 후원회의 지정을 철회한 때 또는 정관에서 정한 해산사유(법정해산이외의 사유)가 발생한 때 해산합니다.

후원회 해산신고를 안해도 되는 경우

- □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
- 다. 후원회의 해산신고는 해산된 사실을 단순히 알리는 것이므로 후원회가 사실상 해산되는 날 이후부터는 후원회의 해산신고가 없더라도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모금하는 등의 활동은 일체 할 수 없습니다.

예금계좌 변 경	>	후 원 회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
라. 후원회가 해산한 때,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이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그 회계책임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
후원회 회계보고(법 제40조, 규칙 제40조)

- □ (정기 회계보고) 후원회 회계책임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현재로 7월 31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회계보고를 하여야 합니다.
- © 연간 모금한도액의 2배를 모금할 수 있는 연도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선거일 후 20일 현재로 선거일 후 30일까지, 선거일 후 21일부터 12월 31일 현재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. 다만, 선거일이 12월 중에 있는 경우에는 위 '정기 회계보고'에 의한다.

♥ 후원회 변경등록·해산 관련 과태료(법 제51조)

- □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·해산 신고를 해태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- □ 후원회 변경등록 신청을 허위로 한 자
-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후 원 회 회원모집 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 원 회 변경·해산

[작성예시 1]

[규칙 별지 제8호 서식]

후원회 변경등록신청서

문서번호

E 1 C								
구		분		변경일자	변경사유			
명 7	į)	1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¬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
사무소의	소재	지②	서울특별시 ○○시 ○○로 ○○	전 화	번 호	02-000-0000	2024.11.25.	이사
मी च ग	성	명	(한자:)	주민등록	록번호			
대표자	주	소		전 화	번 호			
정관 또	는 -	규 약						
회인 및 직 인 의	대 :	표 자 <u>l</u> 영						

「정치자금법」 제7조제4항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을 합니다.

20 년 월 일

○○사도의회의원(○○구사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대표자 <u>직인</u> (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 ④

- 1. 정관 또는 규약 1부.
- 2. 대표자의 취임동의서 1부.
- 3. 인영서 1부.
- 4. 회의록 사본 1부.
- 5. 사무소 소재지 약도 1부.
- 1. "변경내용"란에는 기등록사항 중 변경이 있는 사항만 기재하고, 구비서류는 변경내용에 해당될 경우에 한합니다.
 - 2. "명칭"란에는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재합니다.
 - 3. 인영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〈별지〉에 의합니다.
 - 4. 회의록 사본은 「정치자금법」 또는 정관에 의한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따라 후원회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 - 5. 회의록에는 기록자·확인자의 서명·날인이 있어야 하며, 사본을 제출하는 때에는 "원본대조필"표시와 담당자의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.

예금계좌 변 경 ▶ 회원모집	>	후 원 금 모 금	>	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	작 성 요 령
1)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 ※ <mark>후원회의 명칭은 변경사항이 없더라도 적습니다.</mark>
2	기존 등록된 후원회 정보에서 변경된 부분만 적습니다. ※ 변경이 되지 않은 부분은 기재 생략
3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4	변경이 된 사항에 대한 서류만 구비합니다. ※ 회의록 첨부 필요 - 대표자 변경, 정관 변경

후 원 회 회원모집 후 원 금 모 금 정치자금영수증 발행 후 원 회 변경·해산

[작성예시 2]

[규칙 별지 제22호 서식]

>

후원회 해산신고서								
문서번호								
명 칭①	○○시·도의회의원(○○구·시·군의회의원)○○○후원회							
해 산 사 유②	후원회 정관에 따른 자진 해산 / 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							
해 산 연 월 일③	20							

후원회를 위와 같이 해산하였기에 「정치자금법」 제19조제3항 본문 및 「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」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신고합니다.

20 년 월 일

OO시도의회의원(OO구시군의회의원)OOO후원회 대표자

직인

4

○○선거관리위원회 귀중

※ 구비서류⑤

- 1. 해산에 관한 회의록 사본 1부(자진해산 시에만 첨부).
- 2. 후원회 지정철회서 1부(후원회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 시에만 첨부).

예금계좌 변 경 ▶	후 원 회 회원모집	후 원 금 모 금	➤ 정치자금영수증 발행	>	후 원 회 변경·해산
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

작 성 요 령	
1	후원회의 명칭을 적습니다. 예) 과천시의회의원홍길동후원회
2	후원회 해산 사유를 적습니다. ※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로 인하여 해산되는 경우 해산 신고 불요
3	해산 연월일을 적습니다. 해산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
4	후원회 대표자의 신고한 인영(직인)을 찍습니다.
(5)	후원회 정관에 따른 자진 해산 시에는 관련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고 후원회지정권자의 지정철회에 따른 해산 시에는 후원회 지정철회서를 첨부합니다.